

3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국채전문유통시장 조성제도 정비)
- 나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(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코스닥시장 상장제도 마련)
- 다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전문투자자 정의 및 명목회사 기준 수정)
- 라.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(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시장 개설)
- 마.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시장 관련 매매제도)
- 바.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(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코스닥시장 공시제도 마련)
- 사.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(청산결제 대상 주권등 정의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추가)

3. 한국거래소 규정*

가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6/3/25 개정 · 2026/4/1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경과종목 조성제도 도입 및 원금이자분리채권 전문딜러 폐지에 따라 국채전문유통시장 조성제도 및 기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
 - 경과종목 조성제도는 기 발행된 국고채 중 지표종목(가장 최근에 발행되어 유동성이 높은 종목)을 제외한 이른바 경과물의 거래 활성화와 유동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
 - 지표종목 위주의 거래 편중을 막고, 경과물의 거래량을 늘려 전체 국채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함
 - 국채전문유통시장 조성제도는 국채의 유동성 증대 및 가격 발견 긴의 강화를 위한 제도로 국채전문유통시장은 국고채, 통화안정증권, 예금보험공사채권을 거래대상으로 하며 전자거래시스템 기반의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짐
 - 직접 참가자격을 갖춘 국채딜러가 주요 거래 참가자이며, 일반 기관투자자의 경우 위탁매매를 통해 참가할 수 있음

2) 주요 내용

- 국채전문유통시장 조성제도 정비(제79조의2, 제81조, 제81조의2 및 제99조의7)
 - 정부의 경과종목 조성제도 도입에 따라 국고채전문딜러 및 예비전문 딜러의 경과종목에 대한 양방향 조성호가 제출 근거 및 호가제출 방법 등을 정비
 - 채권시장조성위원회의 비지표종목에 대한 양방향 조성호가의 스프레드, 개수 및 수량 등을 준용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□ 기타 조문 정비(제79조의2, 제80조, 제99조의3 및 제99조의5)

- 정부의 스트립전문딜러 폐지에 따른 자구 정비
 - 기존 스트립전문딜러의 의무 및 권한을 전문딜러에게 부여

나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(2026/3/4 개정 · 2026/3/17 시행, 2026/3/31 개정 · 2026/4/1 시행)

1) 2026/3/4 개정 · 2026/3/17 시행

가) 개정 이유

- 벤처 · 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코스닥시장에 도입하기 위해 상장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

나) 주요 내용

□ 상장종목 및 보통주식 등의 정의 수정(제2조 제1항)

- ‘상장종목’ 정의
 - (기존)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, 외국주식예탁증권, 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
 - (개정)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, 외국주식예탁증권, 신주인수권증권, 신주인수권증서 및 수익증권
- ‘보통주식’의 정의 단서 조항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 및 기업성장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제외

□ 상장예비심사 절차 규정(제5조, 제6조 제2항, 제8조 제1항 제1호, 제10조 제1항)

- 상장예비심사 신청 후 신고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, 예비심사 기한을 국내기업과 동일(45일 이내)하게 설정
-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불인정에 대한 규정은 도입하되, 기업인수 목적회사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제도는 미도입

□ 자진 상장폐지 신청 불허(제22조 제1항)

- 기업인수목적회사 및 기업성장투자회사는 그 주식의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없음

□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신설(제85조의2~제85조의4)

-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정의, 상장예비심사 신청 후 신고사항 및 재무제표 적용기준 등 상장업무 일반 규정

□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제도 마련(제85조의5~제85조의18)

- 상장예비심사 신청 이전 사전협의 의무화
- 법률에 따른 등록, 주식(수익증권)의 양도제한 금지 등 형식적 심사요건을 마련하는 한편, 보통주식의 질적심사 기준을 적용
 - 단,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업의 계속성 측면은 제외
- 추가상장 및 변경상장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, 규모 미달, 공시의무 위반, 감사의견 비적정 등에 따른 관리 종목 지정 요건 마련
- 규모 미달 지속, 감사의견 비적정 지속, 업무 정지 등의 경우를 상장폐지 요건으로 하고, 일부 요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허용
 - 상장 관련 서류 허위 기재,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한 경우
-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 사모로 발행된 주식(수익증권)을 취득한 경우를 의무보유 대상으로 정하고, 위반시 조치를 마련

2) 2026/3/31 개정 · 2026/4/1 시행

가) 개정 이유

- ‘부실기업 신속 · 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’(2026.2.12., 관계 기관 합동) 관련 조치로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시 기업에게 부여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을 축소하는 등 상장폐지 절차를 효율화 하기 위함

나) 주요 내용

□ 상장폐지절차 효율화(제63조 제4항)

-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시 기업에게 부여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축소
 - (기존) 1심 1년, 2심 최대 1년, 1심과 2심 합산 최대 1년 6개월
 - (개정) 1심 최대 1년, 2심 최대 6개월, 1심과 2심 합산 최대 1년

다. 코스닥규정 상장규정 시행세칙 (2026/3/16 개정 · 2026/3/17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벤처 · 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코스닥시장에 도입하기 위해 상장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전문투자자 정의 및 명목회사 기준 수정(제2조 제1항, 제24조 제1항)
 -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 자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포함
 - 명목회사 기준 중 기업성장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 신설
-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신설(제82조의2~제82조의9 등)
 - 상장예비심사·신규상장 신청 서류(별표 1, 별표 2), 추가·변경상장신청 서류(별표 5),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규정(별표 10)
 - 상장수수료(별표 14) 기준 및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도입에 따른 관련 상장서식 마련(별지 제4호, 제12호, 제13호, 제14호, 제25호)

라.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(2026/3/4 개정 · 2026/4/27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벤처·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코스닥시장 도입을 위해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시장을 개설하고 관련 매매제도를 마련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회원의 정의에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을 추가(제2조 제2항)
 - (기존) '회원'이라 함은 증권회원 및 지분증권전문회원을 말한다
 - (개정) '회원'이라 함은 증권회원, 지분증권전문회원 및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을 말한다
-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정의 신설(제2조 제21항)
 -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이란,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 또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 자산탁 수익증권을 말함
- 코스닥시장 내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시장 개설(제4조 제1항)
 - 코스닥 시장의 구분에 있어 주식시장, 신주인수권증권시장, 신주인수권증서시장에 추가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증권시장을 신설

-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관련 매매제도 정비(제8조, 제9조의2, 제14조, 제23조의3, 제27조의2, 제43조)
 - (매매거래) 호가의 가격 제한폭(기준가격의 $\pm 30\%$) 적용 등
 - (시장관리 등) 변동성완화장치 등 가격안정화장치 도입, 대규모 착오매매의 구제 적용 등
 - (대용증권)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대용증권 지정

마.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6/3/16 개정 · 2026/4/27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시장 개설과 관련하여 「코스닥시장 업무규정」이 개정됨에 따라, 업무규정에서 세칙으로 위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시장의 세부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시장 관련 매매제도(제7조의3, 제17조, 제18조)
 - (호가의 종류) 회원이 증권의 종류별로 제출할 수 있는 호가의 종류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지정 가호가를 추가
 - (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결정방법) 법 제238조 제6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
 - 상장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공표된 기준가격으로 하며, 상장일 전일에 공표되는 경우에는 17시까지 공표된 것으로 한정
 - (호가가격단위) 1주(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), 1좌(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)
- 대규모착오매매 구제요건(제35조의2, 업무서식 10의2)
 - 손실금액의 시장별 산출
 - 주식시장,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시장별로 각각 산출
- 대용증권 지정 제외 요건 마련(제44조)
 - 관리종목,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및 정리매매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대용증권 지정 제외

바.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(2026/3/4 개정 · 2026/3/17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벤처·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코스닥시장에 도입하기 위해 공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
 -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‘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(BDC)도입으로 민간자본 중심의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’ (2025.8.27) 참고

2) 주요 내용

-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등 정의, 성실공시의무, 공시 및 신고사항 제출방법 규정(제50조의2~제50조의6)
 -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(제229조 제6호)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말함
 -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을 성실히 신고하고, 공시 이전에 그 내용이 증권시장에 풍문 또는 보도 등으로 누설되거나 유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
 - 거래소에 공시하고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라 작성·제출(자본시장법 제436조)
-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에 공시의무 부과를 위한 규정 신설(제50조의7~제50조의12)
 - 기업성장집합투자신탁수익증권 상장법인 및 기업성장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에 대한 공시신고사항, 조회공시의무 신설
 - (기업성장집합투자신탁수익증권 상장법인) 투자신탁 형태로 설정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운용사 등
 - (기업성장집합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) 투자회사 형태로 설립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
-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 제재를 위한 규정 신설(제50조의13~제50조의17)
 - 불성실공시의 유형을 공시불이행, 공시반복, 공시변경으로 구분하여 규정
 - 불성실공시 발생 시 대외공표 및 주의조치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신설
 - 불성실공시 적용예외 근거규정 신설
 - 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 관련 근거규정 신설

-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매거래정지, 시장신고사항 등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에 대한 상장관리 방안 마련(제50조의18~제50조의24)
 - 조회공시 관련 불응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매거래 정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
 - 시장 관리를 위한 시장신고사항 및 거래소 안내사항 규정
 - 거래소의 공시유보 및 정정공시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
 - 공시실무를 위한 공시책임자 및 공시대리인 신고 의무 근거 마련
 - 영문공시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

사.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(2026/3/4 개정 · 시행)¹⁾

1) 개정 이유

- 벤처 · 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시장이 코스닥시장 내에 개설됨에 따라 청산결제 대상 주권 등의 정의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을 추가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청산결제 대상 주권 등의 정의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을 추가(제2조 제1항)
 -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,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,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 추가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1)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